

# 힐마 카운티 수도국

## 주거용 수도 공급 중단에 관한 방침

### 목적

이 방침은 “수도중단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법안998을 준수하기 위해 정립되었고 2018년 9월 28일에 주지사가 승인하였다.

### 발효일

이 방침은 2020년 4월1일부터 발효한다.

### 출판된 언어

이 방침과 이 방침에 따른 필수 통지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지역구의 수도서비스 구역에 사는 주민의 최소한 십(10)퍼센트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를 포함하는 민사법 1632항에 나온 언어로 찾아보고 출판되어야 한다.

###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이전 요건

- A. 지역구는 고객의 미납이 최소한 (60)일 이상 체납이 될 때까지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하기 전에 칠영업일보다 더 빠르지 않은 날짜에, 지역구는 전화나 통지서로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연락해야 한다.
- B. 하부문단(A)에 의거하여 지역구는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할 때, 직원이 고객에게 이 방침을 문서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구 직원은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 최저납부, 미납잔고의 할부상환 요청의 절차, 고지서의 검토를 위한 청원과 항소 등의 미납으로 서비스중단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을 제안한다.

c. (A)하부문단에 의거하여 지역구가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통지서로 연락할 때, 체납과 임박한 중단 통지서는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주거지와 관련있는 고객에게 발송한다. 고객의 주소가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서는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로 보내고, “입주자” 앞으로 보낸다. 통지서는 분명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나 국한하지 않는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 금액
- c. 주거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납부일이나 납부약정 체결일이 필수적이며, 고지서 요금이 체납된 날짜로부터 육십(60)일로 정해야 하고, 부장의 재량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 d. 체납료를 납부하기 위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 설명
- e. 고지서 검토와 항소를 청원하는 절차 설명
- f. 고객이 주거용 서비스의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을 포함한 납부연기, 납부인하,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하는 절차의 설명

### 성실한 통보에 대한 요건

지역구가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하지 못하거나 통지서가 배달이 불가능하여 돌아온 경우, 지역구는 미납으로 임박한 서비스 중단 통지서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에 관한 지역구의 방침을 주거지에 찾아가서 두고 오거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는 방법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주거지의 성인이 지역구나 다른 행정부, 항소를 합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기관에 수도요금을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 대기 중이면 지역구는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금지함

- A. 다음 상황에 모두 부합될 경우 공급자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1. 수도 공급 중단으로 인해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물에 사는 거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면 소비자나 소비자의 세입자는, 복지제도법의 14088항의 (b)관의 (1)문단의 (A)하부문단에 정의된 용어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다

11. 고객은 지역구의 정상 청구주기에서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객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면 경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며,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이백(200)퍼센트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이다.

- 5 -

- m. 고객은 체납요금에 대해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 납부인하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B. 상기 조건에 전부 부합되면, 지역구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한 가지를 제안한다.

1. 미납잔고의 할부상환

11. 별도납부일정의 참여

- m. 다른 요율납부자에게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기금을 지원하여 미납잔액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인하함

- 1v. 일시적 납부연기

C. 미납잔고를 12개월 내에 납부하는 조건과, 부장이 미납잔액의 일부나 전체의 인하를 승인하는 조건 하에서, 지역구 이사회가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하고 수도예산으로 분명히 이체한 재산세 세수로 납부인하를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장은 (B)문단에 서술되고 고객이 이행하는 요금납부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납부방식의 범위를 정한다.

D. 다음 중 한 가지 상황에서 지역구가 서비스 중단 의사 최종통지서를 건물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한 이후 오(5)영업일보다 더 빠르지 않은 날짜에 주거용 서비스가 중단된다.

1. 고객은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약정, 납부연기약정이나 인하약정을 육십(60)일 이상 준수하지 않는다.

11.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약정, 납부연기약정이나 인하약정을 이행하는 중에, 고객은 현재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육십(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 수도 서비스의 복구

A. 미납으로 인하여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자마자 즉시 지역구는 주거용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준다.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 이하라고 증명하는 주거용 고객에 대해, 지역구는 다음 두 가지를 한다.

- 6 -

1. 정상 영업시간에 재연결한 재연결 비용은 오십달러(\$50)를 초과하면 안되며, 그보다 실제 재연결 비용이 더 적으면 실제 재연결 비용으로 한다. 비영업시간에 주거용 서비스를 재연결하면, 지역구는 백오십(\$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재연결 비용을 정하고, 그보다 실제 재연결 비용이 더 적으면 실제 재연결 비용으로 한다. 정상 영업시간의 재연결 최고 비용인 오십달러(\$50)와 비영업시간의 백오십달러(\$150)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받는다. 지역구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인상을 정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11. 십이(12)개월마다 체납 고지서요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다.

B. 고객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보조, 메디칼, 보조보장소득/주정부

보조금프로그램,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보조 영양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혹은 고객은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이백(200) 퍼센트보다 적다고 신고하는 경우, 지역구는 주거용 고객의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이백(200) 퍼센트 이하라고 간주한다.

### 집주인-세입자 관계에 대한 서비스

지역구가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 I 7008항에 정의된 노동캠프의 영구 주거건물의 입주자에게 개별 계량기로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한 주거지, 건물, 파크의 주인, 관리자, 운영자는 기록상 고객인 경우, 지역구는 집주인의 계정이 체납이면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한 십(10)일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거 입주자에게 통지서 방식으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통지서에서 주거 입주자가 체납 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고객이 될 권리가 있으며, 그리고 나면 서비스 요금을 청구받게 되는 내용을 주거용 입주자에게 알려준다.

입주자가 서비스약관에 동의하고 법의 요건, 지역구의 조례안, 결의안, 규칙,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구는 주거용 세입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거용 세입자 한 명 이상이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거나, 혹은 지역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거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종료하는 물리적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는 경우,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서비스 약관에 부합한 주거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

### 보고 요건

지역구는 납부불능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연간 중단 수치를 지역구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주정부 수자원 통제국에 보고한다

### 이 방침의 제한

이 방침에서 분명히 언급한 이유가 아닌 고객의 무허가 행동이 포함되거나 국한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 방침의 어떤 내용도 고객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지역구의 능력이 제약을 받거나, 제한되거나, 어떤 식으로 약화하지 못한다.

### 체납료의 수금을 보호하는 조치

이 정책의 어떠한 규정도 캘리포니아 주 법에 의해 규정된 연체료 징수를 확보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는 교육구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미납 수수료, 카운티 재산세를 통한 징수 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과를 포함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일정 A

### 서비스 재구축에 대한 연체 요금 및 요금

연체 유틸리티 계정은 고객의 비용으로 수도 서비스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힐마 카운티 워터 디스트릭트는 계정이 체납되거나 서비스 연결이 끊어질 때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적절히 부과합니다.

#### A. 연체료

이 법안의 기한은 매월 15일입니다. 연체료는 25일 오전 8시 30분에 연체된 청구서에 부과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연체료는 \$10.00입니다.

#### B. 서비스 재구축 책임

재설립 요금.....	\$ 50.00	
근무	시간	외*
충전.....	\$100.00	
근무 시간 이후에 서비스를 다시 설정하는 경우 총 요금*.....	\$150.00	

※근무 시간은 오후 3시 30분~오전 7:00의 정상 업무 이외의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 C. 額外費用

\$500.00의 수수료 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요금은 불법 연결 또는 기타 무단 물 사용에 대해 부과됩니다.

물 연결 끊김에 대한 수수료는 매우 빠르게 합산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행정 및 운영 직원 시간, 차량 요금 및 기타 중 벌금을 포함 할 수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합니다.

지구가 미납의 이유로 물 서비스를 종료할 목적으로 지구 직원을 고객의 부지에 보내야 할 때마다, 수도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설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본 스케줄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